

#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1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8. 19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8. 20
- 라. 상정일자 : 2010. 9. 10(제187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
 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 - 질의 및 토론
  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.(안 제1조)

-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으로 함.(안 제2조)
- 재단법인의 사업수행 범위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.(안 제3조)
- 재단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,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)
-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, 건물,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.(안 제8조)
- 송도글로벌대학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·연구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-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5조)
-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○ 동 제정 조례안은

-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글로벌 대학유치,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해 동북아 교육허브도시 실현하고자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#### ○ 검토의견으로

-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여 제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, 동 조례안의 제명은 설립만을 명기하고 있으나, 조례안의 내용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을 『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(안 제3조) 재단의 사업 수행과 관련,
  - ▶ 재단 설립 후 조례안에 의한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· 시비, 수익사업 등 재원 확보운영 방안과
  - ▶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부서의 설명이 요구됨.
- (안 제13조)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관련  
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기를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- 기타 조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# < 질 의 >

- 김기홍, 이재병, 홍성욱 위원
  - 이사회 구성계획, 직원채용계획안 수립 여부
  - 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사전 설명 필요
  - 입주예정학교 지연 질의
  -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
  - 안 제6조 이사회 구성 관련 당연직 이사에 외국학교 대표 추가
  - 재단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
  - 민간투자자본 5,750억원 중 지출 부분

##### < 답 변 >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 교육담당 김종태
  - 이사회 구성계획 및 직용채용 계획 수립시 자료 제출
  - 조례안 상정시 사전 설명토록 하겠음
  - 송도글로벌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설명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

나. 반대 : 홍성욱, 신동수, 이재병, 김기홍 위원

## 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4명 찬성 : 4명)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 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“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”를 “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“로 한다.

안 제6조 중 “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”를 “대표이사,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3조제1항 중 “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”를 “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”로 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</u></p> <p>제6조(이사회) 이사회는 이사장, <u>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</u></p> <p>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<u>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	<p><u>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u></p> <p>제6조(이사회)-----<u>대표이사,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</u></p> <p>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<u>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

#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송도글로벌대학을 활성화 시키고,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의 지원 및 관리
2. 외국 교육·연구기관 유치·설립 지원
3. 그 밖의 송도글로벌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해산에 관한 사항
5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공고에 관한 사항
9. 사업에 관한 사항
10. 기금에 관한 사항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임원)** 재단에는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, 감사를 둔다.

**제6조(이사회)**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,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7조(운영재원)**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
3. 재단 사업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**제8조(출연금 등)**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·건물·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**제9조(외국 교육·연구기관 지원기금의 설치)** 송도글로벌대학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·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

제10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·개인의 기부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

제11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외국 교육·연구기관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용자 등 운영비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2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검사 등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

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6조(공무원의 파견)**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7조(운영규정)**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